

04 자퇴와 검정고시

학적은 어떻게 되나

유예·자퇴·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휴학	3
03 유급	4
04 그만둔 뒤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휴학·자퇴·퇴학·제적·유급** — 교육부 규정이 정한 뜻 그대로
- ◆ **휴학과 자퇴의 차이** — 학적이 남는가, 복학인가 재입학인가
- ◆ **유급** —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못 채우면 그만둘 생각이 없어도 걸립니다
- ◆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01 · 먼저 사실부터

자퇴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 안에 사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는 휴학이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잠시 멈추는 길이 제도 안에 있습니다.

용어	규정이 정한 뜻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는 불가 — 고등학교는 된다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등학교에 「휴학」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자퇴 말고 잠시 멈추는 길이 제도 안에 있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휴학 허가와 사유 인정 범위는 학교장과 학칙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02 · 휴학

먼저 알아보실 자리

규정의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는 불가 — 고등학교는 된다」

	휴학	자퇴
학적	남습니다	없어집니다
돌아올 때	복학하면 됩니다	재입학 절차를 밟습니다
누가 정하나	학교장 허가	본인의 뜻
사유	질병 등	개인·가정 사정

첫째 줄이 큰 차이입니다. 휴학은 학적이 남습니다. 돌아올 때 재입학이 아니라 복학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학 허가 사유 인정 범위는 학교장과 학칙에 따른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값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휴학이 되는지」를 먼저 여쭙보십시오.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자퇴를 정하는 것과 묻지도 않고 자퇴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휴학 허가 요건과 기간은 학칙에 따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03 · 유급

뜻밖에 걸리는 자리

그만두려던 것이 아닌데 학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수업일수 191일이면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 대상이 된다(3분의 2 올림)입니다.

수업일수	3분의 2	이만큼 못 나오면
191일인 경우	128일	유급 대상

결석이 쌓이면 그만둘 생각이 없어도 학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적이 흔들리면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차례	무엇을
1	결석이 쌓이고 있는지 봅니다
2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냅니다
3	길어질 것 같으면 휴학을 여쭙습니다
4	그다음에 자퇴를 생각합니다

4번이 마지막입니다. 1·2·3을 건너뛰고 4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셋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별표 8. 출결 인정과 휴학 요건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04 · 그만둔 뒤

학교 밖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아무 데도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	어떤 도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 복귀 · 검정고시 준비 · 진로 ·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서·심리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그만두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는 제도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학업중단 숙려제는 그만두겠다고 한 학생에게 바로 처리하지 않고 숙려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고, 학교가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먼저 옵니다. 그 시간을 쓰십시오.

학적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휴학 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학교에 휴학이 되는지 물어봤는가
- ☐ 휴학과 자퇴의 차이 를 아는가 (학적이 남는가)
- ☐ 결석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 ☐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학업중단 숙려제 를 안내받았는가
- ☐ 꿈드림 같은 기관을 알아봤는가
- ☐ 결정을 한 학기 뒤로 미룰 수 있는가

여덟째를 권해 드립니다. 급하게 정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퇴와 계속 다니기」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학이 있고, 숙려제가 있고, 학교 밖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로만 보시면 급한 결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05 · 자주 묻는 것

학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휴학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규정은 「일정기간」이라고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아야 합니다.

사유도 「질병 등」이라고 되어 있어 무엇까지 인정되는지는 학교가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걸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고, 학교에 여쭙보셔야 합니다. 묻는 것은 「휴학이 가능한지, 사유는 무엇이 인정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복학은 언제 하는지」 넷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에 여쭙보시면 됩니다.

Q. 자퇴하면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제적·퇴학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기준일은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한 해에 몇 차례뿐입니다.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다음 시험까지 몇 달이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바로 준비하면 된다」는 계산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를 찾아 응시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순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확인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휴학·숙려제·학교 밖 지원이 자퇴와 계속 다니기 사이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부터 알아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기재요령의 학적 용어 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휴학 요건·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은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고에 따릅니다 —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